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68 발의연월일: 2020. 9. 14.

발 의 자:양향자·양정숙·이병훈

김홍걸ㆍ허종식ㆍ최종윤

김수흥 • 이용빈 • 임호선

이형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재정 지원 및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입주한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원대상을 입주기업으로 확대하고,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을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전단 중 "입주국내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를 "입주기업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를 "입주기업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는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 전단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를 각각 "입주기업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의"를 "입주기업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중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를 각 "입주기업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	
유구역에 입주하는 <u>외국인투자</u>	<u>기업(이하"입</u>
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	주기업"이라 한다)
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	
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	
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②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유치	
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임대	
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	
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연	
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신규로 지정</u>
	된 경제자유구역에는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

- ③ (생략)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 3년 12월 31일까지는 입주국내 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공유재산의사용료·대부료는 해당 국유·공유재산의사용료·대부료는 해당 국유·공유재산의가액에 연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 2.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비율을 준수할 것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년간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4
입주기업
<u>에</u>
<u><</u> 삭 제>
<u><삭 제></u>
⑤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 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및 외 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 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국유·공 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 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 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 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u>이</u>
<u>주기업에</u>

<삭 제>

<u><삭 제></u>

<신 설>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기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 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생 략)
- ③ <u>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u> <u>주국내복귀기업에</u>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제12조·제18조 및 제19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 ④ 입주기업의-----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4항 전단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u>입주기업에</u>
② (현행과 같음)
③ <u>입주기업에</u>
<u>.</u>

- 주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u>입주외국</u> 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 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 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 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 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

<u>.</u>
⑤입주기업
<u>에</u>
⑥ <u>입주기업에</u>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